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의견청취의견

의안 번호	//3
----------	-----

제출년월일 : 2004. 9. 3.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에 미치는 불편 사항을 일부 구간경계지역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여 향후 주민 거주시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함

2. 주요골자

- 산지등 능선을 이용 획정된 현재의 경계선을 도로여건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그 세부내역을 보면 동일아파트 신축부지를 포함한 사하구 감천1동 일부 12필지 12,817㎡ 를 서구 암남동으로 편입조치 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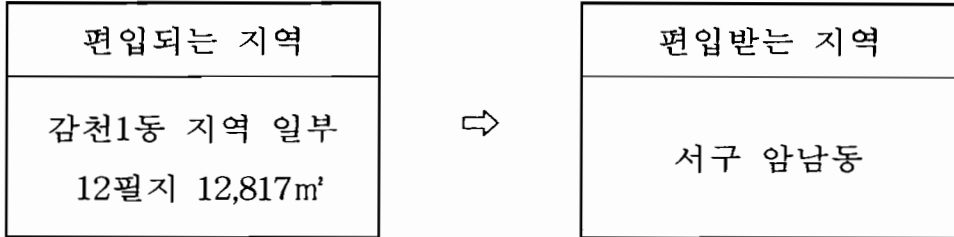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2항

붙임 : 구간경계변경대상지역조정안

구간경계변경대상지역조정안

1. 대상지역



※ 조정안 도면, 지번별 조서 : 따로 붙임

2. 조정사유

- 현재의 구간 경계는 산의 능선을 따라 획정되어 있으며, 사하구는 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거주 인구는 없고 서구는 금강송도타운, 고신의료원과 주택등 주거 지역으로 이 주변의 생활권이 서구쪽으로 형성되어 있음
- 감천1동 산166-13외 1필지와 서구 암남동 16-6 외 1필지 등 4필지의 토지가 동일아파트 건립 부지로서 당해 사업부지에 건축물 2개동 중 1개동이 사하구와 서구 경계상에 위치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 2005년 12월 완공입주시 2개 구청에서 세금부과, 소유권 변동 신고, 공동시설물(주차장, 광장등)이용 문제등 주민마찰과 조례·규칙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 혼란이 예상되므로
-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의 능선 획정을 지양하고 개발여건을 고려, 보편적인 지형지물을 이용한 사전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함

3. 조정규모

(인구기준 : 2004. 8. 31현재)

구 분	현 재				조 정				조 정 후			
	면적 (km ²)	인구 (명)	동 (개)	자체 수입 (백만원)	면적 (km ²)	인구 (명)	동 (개)	자체 수입 (백만원)	면적 (km ²)	인구 (명)	동 (개)	자체 수입 (백만원)
편입되는지역 (사하구)	40.89	375,033	16	51,776	△0.01	-	-	△6	40.88	375,033	16	51,770
편입받는지역 (서구)	13.67	142,655	15	8,798	0.01	-	-	6	13.68	142,655	15	8,804

4. 조정시의 장·단점

장 점(찬성사유)	단 점(반대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행정구역의 불일치에서 오는 동일아파트 입주민 불편 해소 ○ 주위 환경 및 지역정서로 보아 주민 생활권이 서구쪽에 형성되어 있음 ○ 동일한 아파트를 2개구에서 관리해야하는 비효율 지양 ○ 통상적으로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편타당한 지형지물이용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면적축소, 재정수입 감소

5. 지역현황

가. 지역의 일반적 특성

장군산 정상을 정점으로 능선을 따라 구간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며 사하지역은 임야로서 거주인구가 없는 반면 서구지역은 대지로 주거지(금강송도타운, 골프연습장, 주택 등)가 형성되어 있음

나. 거리, 교통편

구 분	현행(사하구)	조정후(서구)
동사무소간	・ 거 리 : 0.8km ・ 교통수단 ▷ 이용수단 : 버스 ▷ 횟 수 : 1 회 ▷ 소요시간 : 3 분 ▷ 이용요금 : 700원	・ 거 리 : 1.2km ・ 교통수단 ▷ 이용수단 : 버스 ▷ 횟 수 : 1 회 ▷ 소요시간 : 4 분 ▷ 이용요금 : 700원
구청간	・ 거 리 : 4.9km ・ 교통수단 ▷ 이용수단 : 버스 ▷ 횟 수 : 1 회 ▷ 소요시간 : 18 분 ▷ 이용요금 : 700원	・ 거 리 : 3.3km ・ 교통수단 ▷ 이용수단 : 버스 ▷ 횟 수 : 1 회 ▷ 소요시간 : 12 분 ▷ 이용요금 : 700원

6. 개발권역과의 관계

○ 개발권역과의 합치여부 : 개발권과 일치함

○ 장래의 전망

현 능선 경계의 경우 이와 유사한 대규모 아파트 등 건립시 또다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하므로 생활권역(고신의료원,주택)을 감안, 계획도로(12m, 8m)를 기준으로 경계 조정 필요

7. 행정구역의 공동사회성

○ 생업상의 공통성 : 서구 생활권에 속함

○ 지역적 감정대립 정도 : 해당없음

○ 경제적 유대 정도 : 해당없음

○ 생활·풍속상의 상이성 등 : 해당없음

8. 경계획정 수단

- 자연적 지형지물
계획도로(12m, 8m)를 기준 구간 경계

9. 지역의견

가. 행정기관 의견

- 감천1동장 - 도로여건과 지형지물을 감안 입주민의 행정
불편 및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구편입 찬성

나. 주민의견

- 편입되는 주민 : 주민등록 인구 없음
- 편입잔여지역 주민 : 2004년 7월 1개월간 구의원, 토지소유자,
각급 단체원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수렴
결과 대부분 서구 편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10. 동일아파트 현황

- 위 치 : 사하구 감천동 산 166-31, 산 166-13 ▷ 2필지
서 구 압남동 16-6, 18-1 ▷ 2필지
- 사업승인 : 2003. 6. 30 ▷ 사용검사예정일(2005. 12월)
- 시 공 사 : (주)동일/대표 이종각 ▷ 부산진구 범천1동 857-14
- 사업규모
 - ▶ 동·세대수 : 2개동 180세대
(사하구 ▷ 101동/19층 107세대, 경계 ▷ 102동/18층 73세대)
 - ▶ 면 적 : 6,784㎡ (사하구 ▷ 4,566㎡, 서 구 ▷ 2,218㎡)

11. 구세입 손실에 따른 부산시 보전

- 2004년 조정대상지역 구 세입 추계 : 종토세 6백만원
- 2006년 아파트분양후 구 세입 추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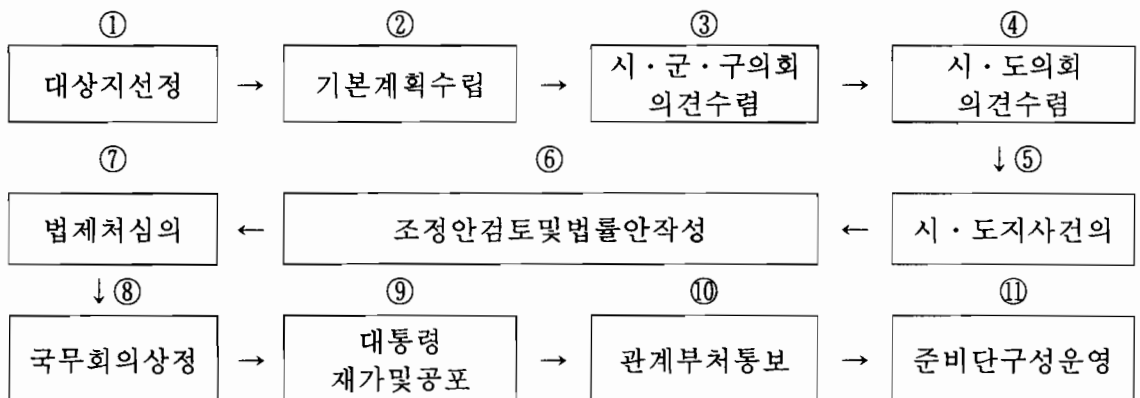
합 계	시 세(입주시)			구 세(매년)		
	소 계	취득세	등록세	소 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59	42	19	23	17	10	7

부산시 보전(예상) - 118백만원

- 경계조정년도 : 당해연도 손실부분 보전 ▶ 59백만원
- 경계조정에 따른 격려금 ▶ 59백만원

※ 동래구 안락동 일부(65필지, 54,478m²)가 수영구 망미동으로, 동래구 명장동 일부(1필지, 3,250m²)가 금정구 서동으로 조정됨 ▶ 2004. 4월
 ※ 동래구의 경우 ▶ 5억 교부금 지급

12. 자치구간 경계조정 절차



지 번 별 조 서

1. 지목별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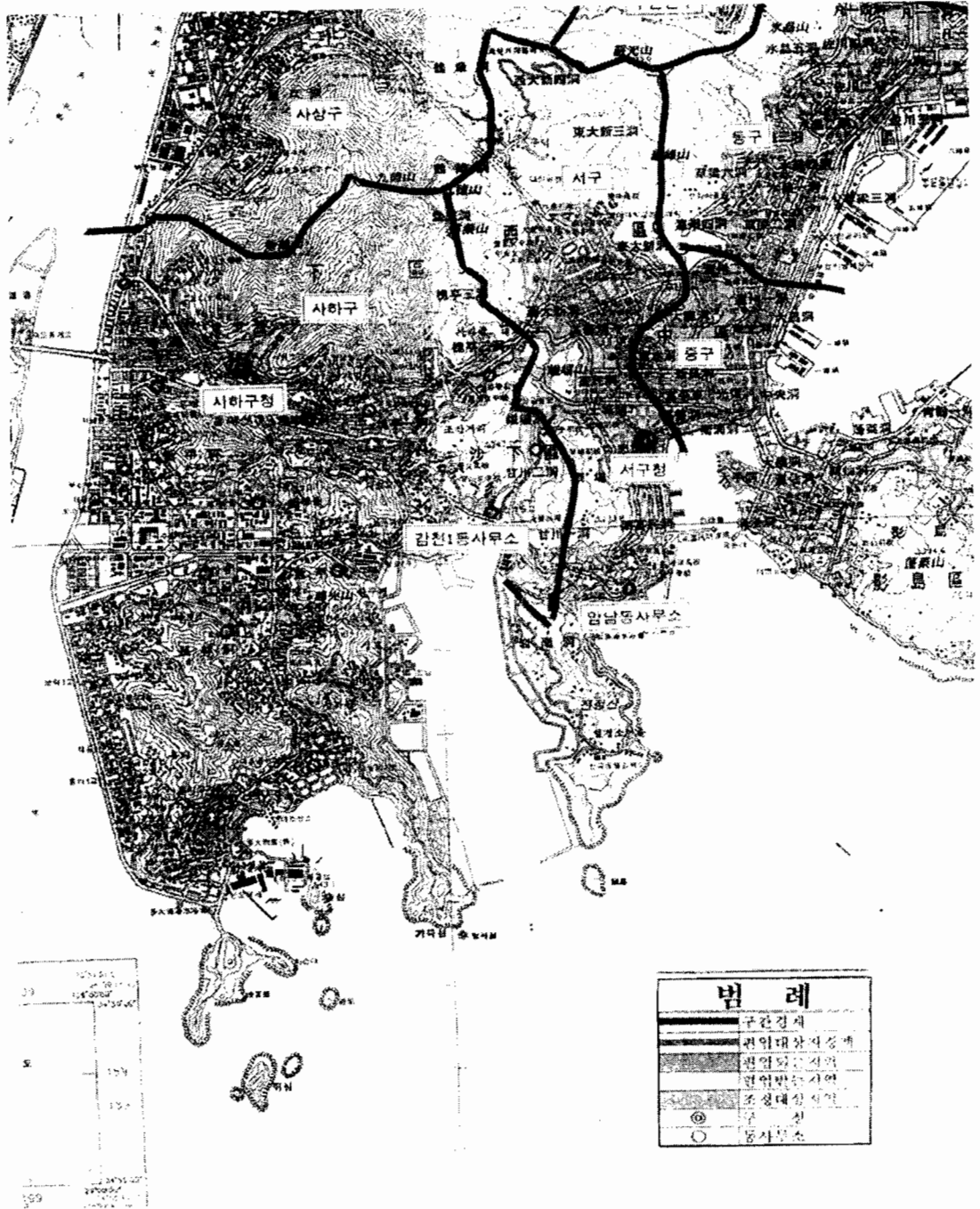
(감천1동)

지 목 별	필 지 수	지 역	비 고
계	12	12,817m ²	
답	1	86m ²	
전	2	632m ²	
임야	9	12,099m ²	

2. 필지별 조서

동	지번	지목	지적(m ²)	소유자
계			12,817	
감천1동	373	답	86	서갑석(감천)
	374	전	215	박상기(서울)
	375	전	417	박상기(서울)
	산 166-1	임야	551	(주)동일
	산 166-6	임야	99	박종선(감천)
	산 166-9	임야	5,293	박상기 외1(서울)
	산 166-13	임야	3,269	(주)동일 - 아파트
	산 166-14	임야	473	박상기 외1(서울)
	산 166-16	임야	208	박상기 외1(서울)
	산 166-26	임야	377	류호열,김재남(강서구)
	산 166-30	임야	532	부산광역시
산 166-31	임야	1,297	(주)동일 - 아파트	

구간경계조정안 도면 (1/50,000)



구간경계조정안 도면 (1/5,000)

